

사업장 안전교육 확 늘려야

-실화책임법 사례 및 소개-

글 양희산 전주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1. 사업장 사고 사례

사업장에는 늘 화재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사고로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서울시민회관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장 화재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 역시 그 규모가 크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및 적용 중지 결정의 도화선이 된 화재사고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자기재산과 남의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부산소재 화학 공장 건물의 2층 바닥에 깔린 전선 중 반 단선된 부분의 과열로 전선피복이 탄화되면서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인근에 있던 건물로 번져서 건물과 사무실 집기, 자재, 공장시설 등이 소실되었던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업장 화재사고를 보면 2008년 1월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들 수 있다. 이 대형 화재사고 40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의 가슴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또한 부산시 중구 신창동 소재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인관광객 10명이 사망하는 등 16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이 화재는 그 인명피해가 주로 외국인관광객에게 발생하여 대내외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 밖에도 고시원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었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그동안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과실에 의한 실화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항으로 불이 난 경우에는 사실상 실화자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화재 사고 시 실화자의 경과실과 중과실을 가려 내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 민법 제 75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실화자의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화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동 법률이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8월 30일 실화책임법의 헌법불합치 및 법적용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합리적인 입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2009년 5월 6일자로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실화자가 경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등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하였다. 실화책임법의 개정으로 화재사고라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실화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실화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특별한 제한 없이 행사하게 되었다. 실화자가 손해배상

액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입증 자체가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사례에 있어서는 경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 위험도

사업장중 가장 취약하고 화재위험이 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최근 3년간(2007년~2009년)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층의 화재빈도가 100개소당 1.09로 나타나고 지하층의 화재빈도가 1.21로 나타나 지하층의 화재빈도가 지상층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면적별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PC방, 수면방 등은 주로 300㎡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300㎡~500㎡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 중 목욕장, 고시원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고루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면적별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대체로 300㎡이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업종 변경과 소유주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내부 구조 변

경이 빈번하여 위험관리가 어렵고 영업특성상 밀폐화, 무창층화¹⁾되어 위험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실내 장식물로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되어 급격한 연소 확대로 화재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업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4. 사업주의 화재사고 대응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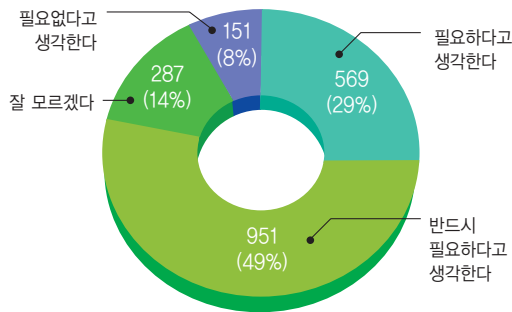
사업주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과업은 '실화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장의 설계·건축은 물론 관리과정에서 소방과 관련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법에 의한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화기 등 각종 소화 장비를 필요한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직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KFFPA는 화재안전우수건물들에 대하여 인정패를 부착하는 등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업주는 안전교육 등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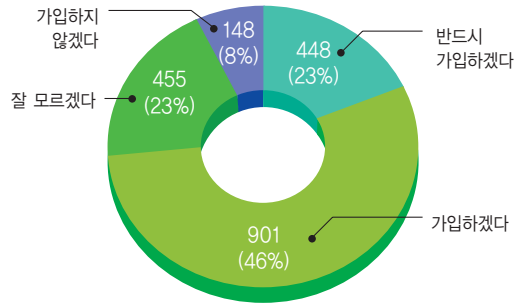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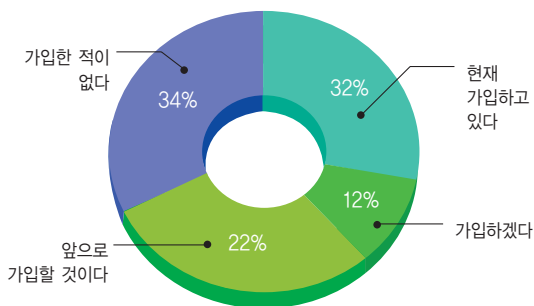
1) 지상층 중 다음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 ① 개구부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②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③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⑤ 내부,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KFPA 등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는 별개로 화재보험과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8%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보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가입 또는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를 차지하여 많은 업주가 보험가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있다면 가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시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였다

사업주가 보험가입 등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구호 및 배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국가,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화재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실화자인 사업주는 저비용으로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㉞

